간행요목의 기재요구

Frankfurt 고등법원 1987. 6. 23 결정

-2WS 113/187 사건-

적용법조

헷센 주 언론법 제 7 조, 제 21 조, 제 21 조의 a

판시사항

1. 출판사의 소재지에 관하여 정확한 기재가 되어 있어서, 간행요목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연락이 가능하고 따라서 간행요목의 기재목적이 달성되고 있는 경우에는, 설사 출판사의경영주 및 책임 편집인의 주소의 기재가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, Hessen 주 연론법 제 7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.

2. Hessen 주 연론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요목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책임편집인의기재중 「책임」이라는 표시는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, 따라서 「수석편집인」 또는 「편집장」이라는 표시로서 이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.

사실개요

Frankfurt/Main 에 소재하는 X 출판사의 1986. 12.4 자 「O」 잡지에는 Ch. W 가 쓴『날카로운 펜에 의하여 찔리다』라는 제목의 기사에서, Frankfurt/Main 출신의 T. B 가 공갈행위를 하였다고 보도하였다.

위 잡지의 간행요목에는 Hessen 주 언론법 제 7 조에서 정하는 책임편집인의 기재가 빠져 있었다. 그리고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 및 책임 있는 편집인의 주소도 역시 빠져 있었다. 부수적으로 행해진 제소강제절차에 있어서는, Hessen 주 언론법 제 21 조 제 2 항 및 형법 제 186 조, 제 52 조의 위반이 존재하느냐의 여부가 문제로 되었다.

결정이유

적법한 형식 및 기간 내에 제기된 공소강제의 신청은 정당하다.

피고들이 혐의를 받고 있는 언론범죄 (이는 범법행위로서 Hessen 주 언론법 제 21 조 a 제 5 항에서 규정한 단기시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)에 관련하여 보면, 위 출판사의 경영주의 주소 및 책임편집인의 주소가 빠져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형사적인 처벌을 가할 수는 없다. 왜냐하면, 출판사의 소재지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, 이를 통하여 위에서 든 사람들과의 연락이 가능하고, 따라서 간행요목 기재의 목적은 달성 될 수 있기 때문이다(Löffler,Presserecht, 3. Aufl Rd. -Nr 50 zu f 8LPG 참조.)

그러나 이에 반하여, 이 사건 결정에서 취하고 있는 견해, 즉, 간행요목에 나타나 있는 「편집<장> : E. K.」라는 표시는, 분명히 위 사람이 단순한 편집인일 뿐만 아니라, 「책임」편집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Hessen 주 언론법 제 7 조의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찬동할 수가 없다.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「책임」이라는 부가어는 포기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「수석편집인」이라는 기재-본건에 있어서는 편집장-에 의하여 대체될 수 없는 것이다. 왜냐하면, 책임편집인이라는 말과, 수석편집인 및 편집장이라는 말은 반드시 동일한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(통설, Löffler, a, a, 0. Rd.-Nr.85 참조)

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, Hessen 주 언론법 제 2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한 범법행위가 있다는 비난 및 K 피고에 대한 비난(이로 인하여 악의의 험담이라는 사소범죄에 관하여 소제기 강제절차가 허용되어 있다.)이 행해지게 된 것은, 오로지, 피고가 X 출판사의 경영주로서 K 부인을 Hessen 주 언론법 제 7 조에서 말하는 책임편집인으로서 표시하였다는, 피고 스스로의 진술만에 기초하는 것이다. 그런데-앞에서 본 바와 같이-이러한 자격은 간행요목에는 전혀 나타나있지 아니하다.

「0」잡지의 1986. 12.4 자의 기사에 신청인 B 가 공갈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고,그 기사가 악의의 험담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은 하등의 의문이 없다. 그럼으로써 위 「0」잡지가 주 언론법 제 21 조 제 2 항에 말하는 형사상 처벌 받을 내용을 담은 간행물로 되는 것이다.

위 기사작성자의 성실한 조사를 토대로 하여, 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반드시 확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다. 위 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Uschi(Ursula) A 는 1986. 12. 5. 선서에 갈음한 진술서에서, 위 기사에 쓰여져 있는 주장과는 반대로, 누구에 대하여도, 그가 B 신청인의 동업자(공모자)로서, 위 신청인 B 가 「입막음 돈」을 요구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.

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K 피고에 대하여는 언론범죄 및 그와 동일한 행위로서 악의의 험담에 대하여 충분한 범죄의 혐의가 발견되지만, 반면, 또 다른 피고에 대하여는 Hessen 주 언론법 제 21 조 제 2 항 위반의 죄책만이 문의될 수 있을 따름이다.

그러나 후자는, 위 신청의 기초로 되는 T. B 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. 왜냐하면, 누구보다도 경영주가 책임져야 할 간행요목의 불완전함은, 신청인에게, 모든 고려될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권리의 실현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.